

붙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3내지5가구 이내로 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의 내·외에는 주민편의, 주거환경 보호, 이용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전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항의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라 한다)로 확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퍼센트(수도권은 3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계속하여 도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또는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단독주택건설용지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승

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